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34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백선희 · 박희승 · 신장식
이해민 · 이수진 · 황운하
정준호 · 김준형 · 한창민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등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자 또는 석

유판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설정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항).
-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 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 석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
2. 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 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 또는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제 석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u> 2. <u>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 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3. <u>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 또는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u>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